

의안번호	2202445
의 퇴 인	권성동의원
회 답 일	2024. 10. 7.
추계번호	24D163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에 경찰·소방·교정직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추가하고,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에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하였다가 사망한 경찰·소방·교정직공무원을 포함하며, 교정공무원 묘역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립현충원 확장비용(183억 6,900만원)과 안장비용 등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400만원, 2034년 2,000만원 등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 동안 총 185억 8,100만원(연평균 18억 5,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34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합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추가(안 제5 조제1항)	23	22	22	21	692	8,870	8,870	20	20	20	18,580
교정공무원 묘역 설치(안 제13조제1항 제5의3호)	1	-	-	-	-	-	-	-	-	-	1
합계	24	22	22	21	692	8,870	8,870	20	20	20	18,581

주: 본 추계는 2031년 국립현충원의 봉안시설 10,000기를 확충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공사기간이 달라지거나 토지매입비를 반영하는 등 봉안시설 확충 공사의 내용이 변경되면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추가	의무규정
2	안 제5조제1항제4호라목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사람에서 2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으로 변경	의무규정
3	안 제13조제1항제5의3호 (묘역의 구분)	국립묘지에 교정공무원 묘역을 설치·운영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	—
2	안 제5조제1항제4호라목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	—
3	안 제13조제1항제5의3호 (묘역의 구분)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국립현충원¹⁾ 안장비용 관련 추가재정소요는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이하 “30년 이상 경찰·소방공무원”)의 경우 안장지가 국립호국원에서 국립현충원으로 변경되나 국립묘지별 안장비용은 108,000원으로 동일하여 안장비용 추가재정소요가 없으나, 교정직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이하 “30년 이상 교정직공무원”)의 경우 안장비용이 추가로 소요됨
- 또한 개정안에 따라 국립호국원²⁾ 안장대상자는 30년 이상 경찰·소방공무원에서 2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경찰·소방·교정직공무원(20년 이상 “경찰·소방·교정직공무원”)으로 변경되어 추가적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이하 “20년 이상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의 안장 비용이 추가로 소요됨
-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라 안장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안장대상자는 아래와 같음

	안장대상			추계여부
	현행법	개정안	개정안에 따른 추가대상자	
국립현충원	—	30년 이상 교정직공무원	30년 이상 교정직공무원	○
	—	30년 이상 경찰·소방공무원	30년 이상 경찰·소방공무원	× (국립호국원에서 국립현충원으로 변경)
국립호국원	30년 이상 경찰·소방공무원	20년 이상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	20~30년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	○

1) 현재 3곳으로 국립서울현충원(서울시 동작구), 국립대전현충원(대전시 유성구), 국립연천현충원(경기도 연천군, 2026년 완공예정)이 있음

2) 현재 6곳으로 국립이천호국원(경기도), 국립괴산호국원(충북), 국립영천호국원(경북), 국립산청호국원(경남), 국립임실호국원(전북), 국립제주호국원(제주)이 있으며, 국립횡성호국원(2028년)과 국립장흥호국원(2029년) 신규조성 예정

- 개정안의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변경 및 추가에 따라 국립현충원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30년 이상 경찰·소방·교정직공무원의 안장대상자가 국립호국원에서 국립현충원으로 변경되고, 30년 이상 교정직공무원이 추가됨에 따라 안장대상자가 순증하는 국립현충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가정함
- 국립현충원의 봉안시설 확충 비용은 토지매입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되, 2022년 착공한 국립이천호국원의 봉안시설 확충 공사비 단가를 참고하여 추정함³⁾
- 국립현충원의 안장비용 산출에 필요한 퇴직연금 수급 경찰·소방·교정직공무원의 사망 인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수급인원 및 경찰청·소방청·법무부의 퇴직 예상인원에 통계청이 2023년 12월에 공표한 장래 성 및 연령별 사망률(남성⁴⁾)을 적용하여 추정함
- 기존 퇴직자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수급 인원과 퇴직연금일시금 수령 인원(추정)을 합산한 인원(추정)에 사망률을 적용하여 추정함
 - 퇴직예정자의 경우 경찰청과 소방청, 법무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평균퇴직인원의 평균퇴직연령인 59세⁵⁾로 가정하고 사망률(남성)을 적용하여 추정함

3) 국립이천호국원 공사비 내역(2023년 기준)

(단위: 백만원)

	조성규모	사업기간	총사업비	상세내역
국립이천호국원	5만기	'18~'24년 ('22년 착공)	71,262	공사비: 47,903, 보상비: 15,850 설계비: 3,665, 부대경비: 3,844

자료: 국가보훈부

4)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교정직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중 여성비율은 각각 0.9%, 0.8%, 3.9%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서, 안장인원 추정 시 남성 사망률을 적용함

5) 30년 이상 재직 경찰·소방·교정직공무원 최근 5년간(2019~2023년) 퇴직인원 및 퇴직 평균연령
(단위: 명, 세)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경찰공무원	퇴직인원수	1,537	1,858	2,299	2,852	2,777	2,265
	퇴직 평균연령	59	59	59	59	59	59
소방공무원	퇴직인원수	480	517	648	741	728	623
	퇴직 평균연령	59	60	59	59	59	59
교정직공무원	퇴직인원수	176	287	445	328	496	346
	퇴직 평균연령	59	59	59	58	58	59

자료: 경찰청, 소방청,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안장대상자와 그 배우자를 함께 합장⁶⁾하는 경우 유골함 비용(47,000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나 현 단계에서 합장 건수 등을 추계하기 어려워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⁷⁾

□ 개정안 부칙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국립현충원의 안장 대상에 30년 이상 교정직공무원 추가

□ 개정안은 국립현충원의 안장 대상에 30년 이상 교정직공무원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립현충원 안장비용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개정안에 따른 대상자인 30년 이상 교정직공무원은 (1) 기존퇴직자와 (2) 퇴직예정자로 구분하여 추계

- 이때, 기존퇴직자 중에는 연령대별로 파악이 가능한 퇴직연금 수급자가 있고, 연령현황을 알 수 없는 퇴직연금 일시금 수급자가 있어, 퇴직연금 일시금 수급자는 퇴직연금수급자의 연령대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추계함
- 퇴직예정자는 전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59세로 가정하여 추계

6) 이 법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배우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 안장자의 유골과 함께 위패의 형태로 안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影幀)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다.
1.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2. 안장 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이 경우 합장은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7)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7)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6	2.2	2.2	2.1	2.1	2.1	2.0

주: 2031년 이후부터는 2.0%인 것으로 전망하여 산출함

(1) 기존 퇴직자

- 기존퇴직자 중 퇴직연금 수급자는 연령대별 현황자료에 통계청의 사망률(남성)을 적용하여 사망자를 추정한 후 안장률을 적용한 안장인원에 안장비용 단가를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2월말 기준 3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여 연금을 받는 교정직공무원은 6,044명임

[표 2] 30년 이상 교정직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인원

(단위: 명)

	교정직공무원		
	남성	여성	소계
50대	812	85	897
60대	2,929	124	3,053
70대	1,645	22	1,667
80세이상	424	3	427
합계	5,810	234	6,044

자료: 공무원연금공단(2023.12.31. 기준)

- (기존퇴직자) 2023년 12월말 기준 퇴직연금 수급자에 퇴직연금 일시금 청구비율을 적용하여 일시금 수령 인원을 산출한 후 현재 생존 중인 퇴직 경찰·소방·교정직공무원(30년 이상)의 인원을 추정하면 8,190명으로 추정⁸⁾
 - 교정직공무원의 연금 대비 일시금 청구비율(35.5%) 적용 시 일시금 수령자는 2,146명(=6,044×35.5%)으로 추정

8) 30년 이상 재직 후 교정직공무원 연금 대비 일시금 청구비율 35.5%

30년 이상 교정직공무원의 퇴직급여 청구 현황: 2019~2023년

(단위: 명, %)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교정직 공무원	연금(A)	24	26	23	30	35	138
	일시금(B)	11	8	3	12	15	49
	일시금 비율(B/A)	45.8%	30.8%	13.0%	40.0%	42.9%	35.5%

주: 지급결정 기준(유족급여청구자, 퇴직수당 청구자는 제외)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표 3] 30년 이상 교정직공무원의 연령별 생존인원 추정

		교정직공무원		합계
		연금	일시금(추정)	
인원 (명)	50대	897	319	1,216
	60대	3,053	1,084	4,137
	70대	1,667	592	2,259
	80세 이상	427	152	579
	합계	6,044	2,146	8,190
비중(%)	50대	14.8%	14.8%	14.8%
	60대	50.5%	50.5%	50.5%
	70대	27.6%	27.6%	27.6%
	80세 이상	7.1%	7.1%	7.1%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공무원연금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안장인원) [표 3]의 3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교정직공무원 생존인원 7,628명에 통계청이 공표한 사망률(남성)을 적용하여 퇴직 교정직공무원(30년 이상)의 사망 인원을 추정한 후, 여기에 국립현충원 안장률 77.65%⁹⁾를 적용하여, 국립현충원 안장 인원을 추정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4] 퇴직 교정직공무원(30년 이상)의 국립현충원 안장 인원 추정: 2025~2034년
(단위: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사망인원(A)	198	193	192	191	191	191	192	193	195	198
안장률(B, %)	77.65	77.65	77.65	77.65	77.65	77.65	77.65	77.65	77.65	77.65
안장인원(C=A×B)	153	150	149	148	148	148	149	150	151	154

주: 1) 사망 인원의 경우 50대는 55세, 60대는 65세, 70대는 75세, 80세 이상은 90세 기준 사망률(남성)을 적용하여 산출함

2) 위 표의 사망 인원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가보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안장비용) 30년 이상 교정직공무원의 국립호국원 안장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표 4]에서 추정된 안장인원 수에 1기당 안장단가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

9) 국립현충원 안장률은 2019년 90.21%, 2020년 73.45%, 2021년 76.43%, 2022년 80.94%, 2023년 67.22%이며, 이를 평균하면 77.65%임

- 1기당 안장비용은 2024년 108,000원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

[표 5] 퇴직 교정직공무원(30년 이상)의 국립현충원 안장비용: 2025~2034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안장 인원(A, 명)	153	150	149	148	148	148	149	150	151	154
1기당 안장단가(B, 천원)	110	113	115	118	120	122	125	127	130	133
추가재정소요(C=A×B, 백만원)	17	17	17	17	18	18	19	19	20	20

자료: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2) 퇴직예정자

- (퇴직예정자) 법무부에 따르면, 추계기간(2025~2034년) 동안 30년 이상 재직 교정직공무원의 연도별 퇴직 인원 추정은 다음과 같음

[표 6] 퇴직예정 교정직공무원(30년 이상)의 연도별 퇴직 인원 추정: 2025~2034년
(단위: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교정직공무원	232	285	374	403	431	354	295	316	339	310

자료: 경찰청, 소방청

- (안장인원) 교정직공무원의 퇴직연령은 58세로 가정하고, 통계청이 공표한 사망률(남성)을 적용하여 퇴직예정 경찰·소방 공무원 사망자수를 추정한 후, 국립현충원 평균 안장률 77.65%를 적용하여, 국립현충원 안장인원을 추정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7] 퇴직예정 경찰·소방 공무원(30년 이상)의 국립현충원 안장 인원 추정: 2025~2034년
(단위: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교정직공무원(A)	1	3	5	7	9	11	13	15	17	19
안장률(B, %)	77.65	77.65	77.65	77.65	77.65	77.65	77.65	77.65	77.65	77.65
안장인원(A×B)	1	2	4	5	7	9	10	12	13	15

자료: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 (안장비용) 30년 이상 재직 후 퇴직 예정인 교정직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아래와 같이 추정

[표 8] 퇴직예정 교정직공무원(30년 이상)의 국립현충원 안장비용: 2025~2034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안장 인원(A, 명)	1	2	4	5	7	9	10	12	13	15
1기당 안장단가(B, 천원)	110	113	115	118	120	122	125	127	130	133
추가재정소요(C=A×B, 백만원)	0.1	0.2	0.4	0.6	0.9	1.1	1.3	1.5	1.7	2.0

자료: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3) 합계

- (추가재정소요)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에 30년 이상 교정직공무원을 포함하는 경우 안장비용은 아래와 같음

[표 9]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에 30년 이상 교정직공무원 포함 시 안장비용: 2025~2034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기존퇴직자(A)	16	16	16	16	17	17	17	18	18	19
퇴직예정자(B)	0.1	0.2	0.4	0.6	0.9	1.1	1.3	1.5	1.7	2.0
합계(A+B)	16	16	16	17	17	18	19	19	20	2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국립호국원의 안장 대상에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경찰·소방·교정직공무원 추가

- 개정안은 국립호국원의 안장 대상에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찰·소방·교정직공무원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립호국원 안장비용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개정안에 따른 대상자인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경찰·소방·교정직공무원은 (1) 기존퇴직자와 (2) 퇴직예정자로 구분하여 추계
 - 이때, 기존퇴직자 중에는 연령대별로 파악이 가능한 퇴직연금 수급자가 있고, 연령현황을 알 수 없는 퇴직연금 일시금 수급자가 있어, 퇴직연금 일시금 수급자는 퇴직연금수급자의 연령대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추계함
 - 퇴직예정자는 경찰공무원 55세, 소방공무원 57세, 교정직공무원 56세¹⁰⁾로 가정하여 추계

(1) 기존 퇴직자 안장비용

- 기존퇴직자 중 퇴직연금 수급자는 연령대별 현황자료에 통계청의 사망률(남성)을 적용하여 사망자를 추정한 후 안장률을 적용한 안장인원에 안장비용 단가를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2월말 기준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후 퇴직하여 연금을 받는 경찰공무원은 6,212명, 소방공무원은 1,880명, 교정직공무원은 846명 등 총 8,938명임

10)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경찰·소방·교정직공무원 최근 5년간(2019~2023년) 퇴직인원 및 퇴직 평균 연령 (단위: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경찰공무원	퇴직인원수	544	475	473	428	294	443
	퇴직 평균연령	55	55	55	54	55	55
소방공무원	퇴직인원수	204	206	219	220	243	218
	퇴직 평균연령	57	57	57	57	56	57
교정직공무원	퇴직인원수	81	107	116	60	95	92
	퇴직 평균연령	55	56	55	56	56	56

자료: 경찰청, 소방청,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표 10] 퇴직 경찰·소방 공무원(20년 이상 30년 미만) 퇴직연금 수급자 인원

(단위: 명)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합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40대	72	16	88	19	2	21	4	4	8	95	22	117
50대	912	62	974	273	20	293	152	20	172	1,337	102	1,439
60대	1,838	40	1,878	771	37	808	286	18	304	2,895	95	2,990
70대	2,188	19	2,207	592		593	207	10	217	2,987	29	3,017
80세이상	1,058	7	1,065	165		165	141	4	145	1,364	11	1,375
합계	6,068	144	6,212	1,820	60	1,880	790	56	846	8,678	260	8,938

자료: 공무원연금공단(2023.12.31. 기준)

□ (기존퇴직자) 2023년 12월말 기준 퇴직연금 수급자에 퇴직연금 일시금 청구비율을 적용하여 일시금 수령 인원을 산출한 후 현재 생존 중인 퇴직 경찰·소방·교정직공무원(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인원을 추정하면 [표 12]과 같이 13,015명으로 추정¹¹⁾

- 경찰공무원의 연금 대비 일시금 청구비율(53.5%) 적용 시 일시금 수령자는 3,321명($=6,212 \times 53.5\%$)으로 추정
- 소방공무원의 연금 대비 일시금 청구비율(40.2%) 적용 시 일시금 수령자는 756명($=1,880 \times 40.2\%$)으로 추정
- 교정직공무원의 연금 대비 일시금 청구비율은 0.6%로 미미하므로 연금 수령인원만을 대상으로 함

11)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후 퇴직급여 청구 현황: 최근 5년간(2019~2023년) 평균

퇴직 경찰·소방 공무원(20년 이상 30년 미만)의 퇴직급여 청구 현황: 2019~2023년

(단위: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경찰 공무원	연금(A)	153	127	107	115	119	621
	일시금(B)	58	51	53	91	79	332
	일시금 비율(B/A)	37.9%	40.2%	49.5%	79.1%	66.4%	53.5%
소방 공무원	연금(A)	99	81	63	70	65	378
	일시금(B)	31	24	26	36	35	152
	일시금 비율(B/A)	31.3%	29.6%	41.3%	51.4%	53.8%	40.2%
교정직 공무원	연금(A)	225	349	429	611	667	2281
	일시금(B)	1	5	3	2	2	13
	일시금 비율(B/A)	0.4%	1.4%	0.7%	0.3%	0.3%	0.6%

주: 지급결정 기준(유족급여청구자, 퇴직수당 청구자는 제외)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표 11] 퇴직 경찰·소방 공무원(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연령별 생존인원 추정

(단위: 명,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합계
		연금	일시금(추정)	연금	일시금(추정)	연금	
인 원	40대	88	47	21	8	8	172
	50대	974	521	293	118	172	2,078
	60대	1,878	1,004	808	325	304	4,319
	70대	2,207	1,180	593	238	217	4,435
	80세이상	1,065	569	165	66	145	2,011
	합계	6,212	3,321	1,880	756	846	13,015
비 중	40대	1.4%	1.4%	1.1%	1.1%	0.9%	1.3%
	50대	15.7%	15.7%	15.6%	15.6%	20.3%	16.0%
	60대	30.2%	30.2%	43.0%	43.0%	35.9%	33.3%
	70대	35.5%	35.5%	31.5%	31.5%	25.7%	34.0%
	80세이상	17.1%	17.1%	8.8%	8.8%	17.1%	15.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공무원연금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

□ (안장인원) [표 12]의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찰·소방 공무원 생존인원 13,015명에 통계청이 공표한 사망률(남성)을 적용하여 퇴직 경찰·소방·교정직공무원(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사망 인원을 추정한 후, 여기에 국립호국원 안장률 37.6%¹²⁾를 적용하여, 국립호국원 안장 인원을 추정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12] 퇴직 경찰·소방·교정직공무원(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국립호국원 안장 인원 추정:
2025~2034년

(단위: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사망인원(A)	500	484	465	445	426	407	391	376	365	357
안장률(B, %)	37.6	37.6	37.6	37.6	37.6	37.6	37.6	37.6	37.6	37.6
안장인원(C=A×B)	188	182	175	167	160	153	147	141	137	134

주: 1) 사망 인원의 경우 40대는 45세, 50대는 55세, 60대는 65세, 70대는 75세, 80세 이상은 90세 기준 사망률(남성)을 적용하여 산출함

2) 위 표의 사망 인원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가보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

12) 국립호국원 안장률은 2019년 41.9%, 2020년 32.7%, 2021년 43.1%, 2022년 36.7%, 2023년 33.5%이며, 이를 평균하면 37.6%임

□ (안장비용)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후 퇴직한 경찰·소방·교정직공무원의 국립호국원 안장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표 13]에서 추정된 안장인원수에 1기당 안장단가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

- 1기당 안장비용은 2024년 108,000원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

[표 13] 퇴직 경찰·소방·교정직공무원(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국립호국원 안장비용:
2025~2034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안장 인원(A, 명)	188	182	175	167	160	153	147	141	137	134
1기당 안장단가(B, 천원)	110	113	115	118	120	122	125	127	130	133
추가재정소요(C=A×B, 백만원)	21	21	20	20	19	19	18	18	18	18

자료: 경찰청, 소방청, 법무부, 국가보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2) 퇴직예정자 안장비용

□ (퇴직예정자) 경찰청과 소방청에 따르면, 추계기간(2025~2034년) 동안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경찰·소방·교정직공무원의 연도별 퇴직 인원 추정은 다음과 같음

[표 14] 퇴직예정 경찰·소방·교정직공무원(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연도별 퇴직 인원 추정:
2025~2034년

(단위: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경찰공무원	91	169	165	294	253	201	259	287	310	394
소방공무원	97	111	78	126	197	251	335	339	339	333
교정직공무원	45	59	68	52	66	96	117	161	188	224

자료: 경찰청, 소방청

□ (안장인원) 퇴직연령은 경찰공무원 55세, 소방공무원은 57세, 교정직공무원은 56세로 가정하여 통계청이 공표한 사망률(남성)을 적용하여 퇴직예

정 경찰·소방·교정직공무원 사망자수를 추정한 후, 국립호국원 평균 안장률을 37.6%를 적용하여, 국립현충원 안장 인원을 추정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15] 퇴직예정 경찰·소방·교정직공무원(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국립호국원 안장 인원 추정:
2025~2034년

(단위: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사망 인원	경찰공무원(A)	0	1	1	2	3	4	5	6	7	8
	소방공무원(B)	1	1	2	2	2	3	4	6	7	8
	교정직공무원(C)	0	0	1	1	1	2	2	3	3	4
	소계(D=A+B+C)	1	2	3	4	6	7	9	12	15	16
안장률(E, %)		37.6	37.6	37.6	37.6	37.6	37.6	37.6	37.6	37.6	37.6
안장인원 (F=D×E)		0	1	1	1	2	3	4	4	5	6

자료: 경찰청, 소방청, 법무부, 국가보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 (안장비용)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후 퇴직예정 경찰·소방·교정직공무원의 국립호국원 안장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표 16]에서 추정된 안장인원 수에 1기당 안장단가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

[표 16] 퇴직예정 경찰·소방·교정직공무원(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국립호국원 안장 인원 추정:
2025~2034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안장인원(A 명)	0	1	1	1	2	3	4	4	5	6
1기당 안장비용 (B, 천원)	110	113	115	118	120	122	125	127	130	133
추가재정소요 (C=A×B, 백만원)	0.0	0.1	0.1	0.2	0.3	0.3	0.4	0.6	0.7	0.8

자료: 국가보훈부, 경찰청 및 소방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3) 합계

- 이와 같이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경찰·소방·교정직공무원을 포함하는 경우 안장비용은 아래와 같음

[표 17]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경찰·소방·교정직공무원 포함 시 안장비용: 2025~2034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기존퇴직자 (A)	21	21	20	20	19	19	18	18	18	18
퇴직예정자 (B)	0.0	0.1	0.1	0.2	0.3	0.3	0.4	0.6	0.7	0.8
합계 (A+B)	21	21	20	20	19	19	19	19	19	1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국립현충원 확충비용

- 개정안은 국립현충원의 안장 대상에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 또는 30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후 사망한 사람,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또는 30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후 사망한 사람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립현충원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국립현충원 확충 규모는 30년 이상 교정직공무원 사망 누적인원수와 30년 이상 경찰·소방공무원의 사망 누적인원수를 합하여 산출함
- 우선 30년 이상 교정직공무원의 사망 누적인원수는 [표 4] 기존퇴직자 안장인원과 [표 7]의 퇴직예정자 인장인원 결과를 합산하여 추정

[표 18] 30년 이상 교정직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인원 추정: 2025~2034년

(단위: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기존퇴직자(A)	153	150	149	148	148	148	149	150	151	154
퇴직예정자(B)	1	2	4	5	7	9	10	12	13	15
합계 (A+B)	154	152	153	153	155	157	159	162	164	169

- 둘째, 30년 이상 경찰·소방공무원의 누적인원수를 아래와 같이 추계함
 - 30년 이상 경찰·소방공무원은 (1) 기존퇴직자와 (2) 퇴직예정자로 구분하고, 기존퇴직자 중에는 연령대별로 파악이 가능한 퇴직연금 수급자가 있고, 연령현황을 알 수 없는 퇴직연금 일시금 수급자가 있어, 퇴직연금 일시금 수급자는 퇴직연금수급자의 연령대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추계함

(1) 기존 퇴직자

- 기존퇴직자 중 퇴직연금 수급자는 연령대별 현황자료에 통계청의 사망률(남성)을 적용하여 사망자를 추정한 후 안장률을 적용한 안장인원에 안장비용 단가를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2월말 기준 30년 이상 재직 후 퇴

직하여 연금을 받는 경찰공무원은 43,572명, 소방 공무원은 7,903명 등 51,475명임

[표 19] 퇴직 경찰·소방 공무원(30년 이상) 퇴직연금 수급자 인원

(단위: 명)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합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50대	2,275	57	2,332	535	8	543	2,810	65	2,875
60대	24,427	247	24,674	5,607	52	5,659	30,034	299	30,333
70대	11,090	62	11,152	1,451	—	1,451	12,541	62	12,603
80세이상	5,403	11	5,414	250	—	250	5,653	11	5,664
합계	43,195	377	43,572	7,843	60	7,903	51,038	437	51,475

자료: 공무원연금공단(2023.12.31. 기준)

□ (기존퇴직자) 2023년 12월말 기준 퇴직연금 수급자에 퇴직연금 일시금 청구비율을 적용하여 일시금 수령 인원을 산출한 후 현재 생존 중인 퇴직 경찰·소방·교정직공무원(30년 이상)의 인원을 추정하면 52,478명으로 추정¹³⁾

- 경찰공무원의 일시금 청구비율(2.0%) 적용 시 일시금 수령자는 873명 (=43,572×2.0%)으로 추정
- 소방공무원의 일시금 청구비율(1.6%) 적용 시 일시금 수령자는 130명 (=7,903×1.6%)으로 추정

13) 30년 이상 재직 후 퇴직급여 청구 현황: 최근 5년간(2019~2023년) 평균

퇴직 경찰·소방 공무원(30년 이상)의 퇴직급여 청구 현황: 2019~2023년

(단위: 명, %)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경찰 공무원	연금(A)	1,911	2,336	1,990	3,024	3,017	12,278
	일시금(B)	42	36	47	56	65	246
	일시금 비율(B/A)	2.2%	1.5%	2.4%	1.9%	2.2%	2.0%
소방 공무원	연금(A)	578	680	560	868	969	3,655
	일시금(B)	5	15	13	13	14	60
	일시금 비율(B/A)	0.9%	2.2%	2.3%	1.5%	1.4%	1.6%

주: 지급결정 기준(유족급여청구자, 퇴직수당 청구자는 제외)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표 20] 퇴직 경찰·소방 공무원(30년 이상)의 연령별 생존인원 추정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합계
		연금	일시금(추정)	연금	일시금(추정)	
인원	50대	2,332	47	543	9	2,931
	60대	24,674	494	5,659	93	30,920
	70대	11,152	223	1,451	24	12,850
	80세 이상	5,414	108	250	4	5,777
	합계	43,572	873	7,903	130	52,478
비중 (%)	50대	5.4%	5.40%	6.9%	6.9%	5.6%
	60대	56.6%	56.60%	71.6%	71.6%	58.9%
	70대	25.6%	25.60%	18.4%	18.4%	24.5%
	80세 이상	12.4%	12.40%	3.2%	3.2%	11.0%
	합계	100.0%	100.00%	100.0%	100.0%	100.0%

자료: 공무원연금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안장인원) [표 20]의 3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찰·소방 공무원 생존인원 52,478명에 통계청이 공표한 사망률(남성)을 적용하여 퇴직 경찰·소방·교정직공무원(30년 이상)의 사망 인원을 추정한 후, 여기에 국립현충원 안장률 77.65%¹⁴⁾를 적용하여, 국립현충원 안장 인원을 추정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21] 퇴직 경찰·소방 공무원(30년 이상)의 국립현충원 안장인원 추정: 2025~2034년
(단위: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사망인원(A)	1,598	1,559	1,514	1,467	1,422	1,381	1,348	1,320	1,302	1,301
안장률(B, %)	77.65	77.65	77.65	77.65	77.65	77.65	77.65	77.65	77.65	77.65
안장인원(C=A×B)	1,241	1,211	1,175	1,139	1,104	1,072	1,047	1,025	1,011	1,010

주: 1) 사망 인원의 경우 50대는 55세, 60대는 65세, 70대는 75세, 80세 이상은 90세 기준 사망률(남성)을 적용하여 산출함

2) 위 표의 사망 인원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가보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14) 국립현충원 안장률은 2019년 90.21%, 2020년 73.45%, 2021년 76.43%, 2022년 80.94%, 2023년 67.22%이며, 이를 평균하면 77.65%임

(2) 퇴직예정자

- (퇴직예정자) 경찰청과 소방청에 따르면, 추계기간(2025~2034년) 동안 30년 이상 재직 경찰·소방 공무원의 연도별 퇴직 인원 추정은 다음과 같음

[표 22] 퇴직예정 경찰·소방 공무원(30년 이상)의 연도별 퇴직 인원 추정: 2025~2034년
(단위: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경찰공무원	2,827	2,958	3,701	4,721	3,959	4,018	4,172	3,775	3,756	3,297
소방공무원	925	1,122	1,146	1,508	1,336	1,373	1,208	958	881	860

자료: 경찰청, 소방청

- (안장인원) 추계에서는 전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연령은 59세로 가정하여 통계청이 공표한 사망률(남성)을 적용하여 퇴직예정 경찰·소방 공무원 사망자수를 추정한 후, 국립현충원 평균 안장률 77.65%를 적용하여, 국립현충원 안장 인원을 추정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23] 퇴직예정 경찰·소방 공무원(30년 이상)의 국립현충원 안장 인원 추정: 2025~2034년
(단위: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사 망 인 원	경찰공무원(A)	11	27	43	63	88	111	134	159	183	208
	소방공무원(B)	4	8	14	20	28	36	43	51	57	64
	소계(C=A+B)	15	34	57	83	116	146	178	210	240	272
안장률(D, %)		77.65	77.65	77.65	77.65	77.65	77.65	77.65	77.65	77.65	77.65
안장 인원(E=C×D)		12	27	44	65	90	114	138	163	187	211

자료: 경찰청과 소방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안장인원 합계) 개정안에 따른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인 30년 이상 경찰·소방공무원의 추계기간 동안 누적 안장인원수는 아래와 같이 추계됨

[표 24] 30년 이상 경찰·소방직공무원 국립현충원 안장인원 추정: 2025~2034년

(단위: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기존퇴직자 안장인원(A)	1,241	1,211	1,175	1,139	1,104	1,072	1,047	1,025	1,011	1,010
퇴직예정자 안장인원(B)	12	27	44	65	90	114	138	163	187	211
합계 (C=A+B)	1,253	1,238	1,219	1,204	1,194	1,186	1,185	1,188	1,198	1,221

주: [표 21]과 [표 23]을 합한 결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국립현충원 확충

- 개정안에 따른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인 30년 이상 경찰·소방·교정직공무원의 추계기간 동안 누적 안장인원수는 아래와 같이 추계됨

[표 25] 30년 이상 경찰·소방·교정직공무원 국립현충원 안장 누적인원 추정: 2025~2034년

(단위: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30년이상 경찰공무원등	1,253	1,238	1,219	1,204	1,194	1,186	1,185	1,188	1,198	1,221
30년 이상 교정직공무원	154	152	153	153	155	157	159	162	164	169
합계	1,407	1,390	1,372	1,357	1,349	1,342	1,344	1,350	1,362	1,390
누적합계	1,407	2,797	4,169	5,525	6,875	8,217	9,561	10,911	12,273	13,663

주: [표 18]과 [표 24]를 합한 결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국가보훈부의 「국립묘지 종합 발전방안 수립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 (2021.12.)에 따르면, 국립현충원의 잔여기수는 2028년 74,722기, 2034년 31,090기임
- 개정안에 따른 국립현충원 안장수요(누적)는 2028년 5,525기, 2034년 13,663기이므로, 개정안의 안장수요를 반영할 경우 국립현충원의 잔여기수가 2034년 17,427기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31년에 국립현충원 봉안시설 10,000기를 확충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26] 개정안에 따른 안장수요 반영 시 국립현충원 안장수급 추정: 2028~2034년
(단위: 기)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현행	안장여력(A)	82,889	74,722	66,612	57,975	51,090	44,387	37,723
	확충계획(B)	-	-	-	-	-	-	-
	안장수요등 ¹⁾ (C)	8,167	8,110	8,637	6,885	6,703	6,664	6,633
	잔여기수(D= A-C)	74,722	66,612	57,975	51,090	44,387	37,723	31,090
개정안	안장수요 ²⁾ (누적)(E)	5,525	6,875	8,217	9,561	10,911	12,273	13,663
과부족(F=D-E)		69,197	59,737	49,758	41,529	33,476	25,450	17,427

주: 1) 안장수요등은 안장수요와 이장수요를 합한 값임

2) 안장수요(누적)는 퇴직자와 퇴직예정자의 안장 인원을 합한 값임

자료: 국가보훈부의 「국립묘지 종합 발전방안 수립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2021.12.)와 국가보훈부의 국립현충원 확충계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국립이천호국원의 공사비 단가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 (2023년)한 건설공사비지수 연평균상승률¹⁵⁾을 적용하면, 개정안에 따른 국립현충원 확충 비용은 183억 6,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공사비: 2022년 국립이천호국원 1기당 공사비(958,060원)에 건설공사비지수의 연평균상승률(6.77%) 적용 시 2030년 1기당 공사비(1,618,268원)에 확충기수(10,000기)를 곱하여 산출하되, 공사기간을 2년으로 가정함
 - 부대경비: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건축 부문 효율 100~200억원 사이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직선보간법을 이용하여 효율을 산출함

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건설공사비지수(매년 12월 기준)는 2019년 116.70이고, 2023년 151.67이므로, 건설공사비지수의 연평균 상승률은 6.77%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주거용건물	116.70	121.09	138.56	147.29	151.67

[표 27] 국립현충원 확충 비용의 추가재정소요: 2029~2031년

(단위: 백만원)

			2029	2030	2031	합 계
국립현충원 확충 비용	공사비			8,091	8,091	16,183
	부대경비	설 계비 (공사비의 4.15%)	671			671
		감 리비 (공사비의 9.13%)		739	739	1,477
		시 설부대비 (공사비의 0.24%)		19	19	38
	합 계		671	8,849	8,849	18,369

- 주 1. 국립현충원의 공사는 2030년에 착공하여 2031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공사비는 각 연도별 50%씩 배분함
 2. 설계비는 2029년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감리비는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보통)을 적용함
 3. 국립현충원의 확충 비용에는 토지매입비가 제외되어 있으며, 해당 금액을 포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보다 증가할 수 있음

라. 교정공무원 묘역 설치(안 제13조제1항제5의3호)

- 개정안에 따라 국립묘지에 교정공무원 묘역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묘역구분을 위한 표지판 제작 및 설치비용 등에 120만원(국가보훈부 제출)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5년에 동 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

마. 추계결과

- 국립현충원의 안장 대상에 30년 이상 경찰공무원등을 추가하는 등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 동안 총 185억 8,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8]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34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합계
국립현충원 안장비용	2	2	2	2	2	2	1	2	1	1	16
국립호국원 안장비용	21	21	20	20	19	19	19	19	19	19	194
국립현충원 확충비용	-	-	-	-	671	8,849	8,849	-	-	-	18,369
교정공무원 묘역 설치	1										1
합 계	24	22	22	21	692	8,870	8,870	20	20	20	18,581

주: 본 추계는 2031년 국립현충원의 봉안시설 10,000기를 확충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공사기간이 달라지거나 토지매입비를 반영하는 등 봉안시설 확충 공사의 내용이 변경되면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IV. 부대의견

- 본 추계에서 2031년 국립현충원의 봉안시설 10,000기를 확충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공사기간이 달라지거나 토지매입비를 반영하는 등 봉안시설 확충 공사의 내용이 변경되면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여은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은구	02-6788-4673	cecil@na.go.kr